

朝鮮前期 釜山地域의 社會와 經濟

이 종 봉
(부산대 사학과 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土地所有와 農業經營
- III. 田稅의 變動과 推移
- IV. 貢物收取의 樣相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은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새로운 국가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에서 여러가지 제도의 정비와 함께 농업의 장려에 힘썼다. 경제제도의 정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전법의 마련이었다. 과전법의 조세체계는 얼마 후 공법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과전법과 공법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물적인 기반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은 건국초기부터 이와 같은 제도의 정비와 함께 농업의 장려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농업기술의 발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서를 편찬하여 보급하거나 적극적인 권농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민의 경제적 기반 강화에 필수적인 것이다. 민의 경제적 안정은 곧 바로 국가재정의 강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국가적으로 농업기술의 발달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조선전기의 토지제도와 농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하지만 이시기 조선전기의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지역의 경제, 즉 토지제도와 농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경제가 어떤 상황 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최근에 이르러 지역사 연구가 진척되면서 조선시대 각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가 참조된다(염정섭, <농업생산력의 발달> 『한국 역사입문』, 풀빛, 1995 ; 김건태, <토지소유관계와 지주제> 『앞의 책』, 1995).

이루어지고 있으므로²⁾ 부산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도 부산지역에서 편찬되는 있는 시사와 군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됨으로써³⁾ 조선시대 지역사의 연구를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부산지역의 농법과 토지소유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전기의 농업기술은 수전과 한전에서 연작상경농법이 본격화되었고, 한전에서 부분적으로 1년 2작의 농법이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부산지역의 농법과 토지소유관계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과전법 혹은 공법체제 하에서 부산지역 田租의 수취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전기 전조는 공전으로 혹은 사전으로 파악되어 수취되었고, 혹은 전조가 중앙으로 상납되거나 왜구의 공비를 위한 倭料로 책정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조선전기에는 고려시대에 3세에 해당하는 전세와 함께 공물이 수취되었다.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공물과 진상은 어떻게 수취되었고, 공물은 토산공물뿐만 아니라 전세공물도 수취되었는데, 전세공물의 수취의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 2) 조선시대 부산지역의 경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鄭貳根, <17·18世紀 釜山地域(東萊府)의 財政> 『港都釜山』 10, 1993 金東哲, <17·18世紀 對日 貿易에서의 公作米 問題> 『港都釜山』 10, 1993 ; 尹用出, <조선후기 機張縣의 三政 운영> 『韓國民族文化』 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6).
- 3) 지두환, <조선전기의 부산> 『부산시사(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4 ; 정제훈, <조선전기의 동래> 『동래구지(상)』, 동래구지편찬위원회, 1995 ; 이종봉, <조선시대의 기장> 『기장군지(상)』,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1.

II. 土地所有와 農業經營

전근대사회의 중심 산업은 농업이다. 조선전기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농업기술의 발달은 어떠한 상황 하에 존재하고 있었고, 민의 토지소유구조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선전기 부산지역 농업기술의 발달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에 부산지역의 농업에 대한 개괄적인 양상을 기록하고 있다.

<2-가>

A)동래현 ---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간전(墾田)이 1천 7백 23결이다. 논이 8분의 5가 못된다. 토의(土宜)는 벼·조·보리이다(『세종실록지리지』, 동래현)

B)기장현 ---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간전(墾田)이 7백 30결이다. 논과 밭이 반반씩이다. 토의(土宜)는 벼·조·콩이다(『세종실록지리지』, 기장현)

위의 자료에 의하면 조선전기 부산지역은 전체 토지 중에서 수전이 50%이상이고, 벼·조·보리·콩이 주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수전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전국의 토지 1,713,726결 중에 수전은 478,537결로서 약 28%에 불과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 1>과 조선전기 부산지

역의 수전과 한전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부산지역이 수전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 전체가 약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 세종실록지리지의 도별 수·한전 결수4)

	수 전	한 전	합	수전/수전+한전 (%)
경도한성부			1,415	
개성유후사	1,607	3,750	5,357	30.0
경 기 도	73,711	120,559	194,270	37.9
충 청 도	95,185	140,929	236,114	40.3
경 상 도	102,675	158,763	261,438	39.3
전 라 도	122,342	141,926	264,268	46.3
황 해 도	35,287	188,593	223,880	15.8
강 원 도	8,426	57,482	65,908	12.8
평 안 도	32,240	279,530	311,770	10.3
함 길 도	7,064	142,242	149,306	4.7
전 국	478,537	1,233,774	1,713,726	27.9

이와 같이 부산지역의 수전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조선전기 부산지역은 이미 수전농업에 대한 농업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수전농업의 농업기술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농사직설』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농업기술을 높이기 위해 하삼도의 농업기술을 토대로 편찬되었는데,5) 이를

4) 이호철, 〈토지과약 방식과 전결〉 『조선전기농업경제사』, 한길사, 1986, 262쪽에서 재인용.

5)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4월 갑오조.

통해 부산지역의 수전농법에 대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조선전기 수전의 경종법은 『농사직설』에 의하면 이앙법·수경직파법·건경직파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가장 지배적인 수전 경종법은 수경직파법이다. 『농사직설』의 수전 경종법은 기경·정지·과종·복토 등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축력과 인력농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소와 쟁기에 의한 우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아울러 시비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15세기 『농사직설』 단계의 경지이용방식은 연작농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⁶⁾

아울러 『농사직설』에는 이앙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이앙법은 이미 고려시대에도 실시되었다.⁷⁾ 그런데 이앙법, 즉 묘종법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지만 이앙기에 가뭄을 만나면 失農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수리문제만 해결되면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2-나>

A)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경상도의 백성은 여름철을 당하여 稻苗를 옮겨 심는다고 하는데, 만약 가뭄을 만나면 모두 농사를 망칠 것이니, 명년부터 일절 금지하라(『태종실록』 권 27, 태종 14년 6월 임자조)

B)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가뭄은 어느 도가 더욱 심한가 하자, 예조 판서 申商이 아뢰기를, 경상도가 더욱 심하옵니다.

6) 조선전기 『농사직설』 단계의 경지이용방식은 연작상경농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앞의 주 1)의 연구사 정리가 참고 된다.

7)李宗峯, <고려시기 수리시설의 발달과 移秧法> 『韓國文化研究』 6, 1993.

하고, 신상이 이어서 이뢰기를, 농사와 누에치는 일이 비록 국가의 중요한 일이오나. 刻迫하게 이를 독려할 수는 없사옵니다. --- 또 아뢰기를, “이제 모심기를 금하오매 백성이 간혹 민망하게 여기는 자가 있사오니, 모심기를 금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농사에 게을러서 스스로 편하려는 계책이 아니겠는가.” 하자, 신상이 아뢰기를, “전토의 수가 적은 자에게는 모심기를 금함이 옳사오나, 전토의 수가 많은 자에게는 모심기를 금하는 것이 옳지 아니합니다. 전토가 많은 사람은 김매고 복을 돌아 주는 일을 어렵게 여기옵는데, 만일 제때에 김을 잘 매주지 않으면 모[苗]는 악하고 풀은 성하여, 마침내 가을에 거둬들일 희망[西成之望]이 없으므로, 전토가 많은 자는 반드시 모심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계유조)

- C) 경상도 고성에 사는 전 保寧縣監 鄭菡 등이 상언하기를, “본 고을의 土性이 차지고 堅剛하여, 갈고 심은 뒤에 만일 가뭄을 만나면, 뒤에 비록 비가 오더라도 흠덩어리가 굳고 단단하여 벼싹이 자라지 못하고 잡초만 더욱 무성하니, 물이 있는 곳을 골라서 미리 苗種을 길러서 묘종이라는 것은 종자를 한 눈에 뿌려서 그 싹이 자라는 것을 기다려서 나누어 심는 것이니, 풀을 매는 데에 공력이 적게 들게 하려 함이다. 4월을 기다려서 옮겨 심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묘종을 금한 뒤로부터 전연 농사를 실패하니, 비읍건대, 民願에 따라서 묘종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명하여 의정부와 여러 曹와 함께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경상도와 강원도의 인민에게 묘종을 금하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으니, 가볍게 고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고 심는 것의 어렵고 쉬운 것과 소출의 다소, 精粗, 虛實과 인정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캐어

물어서 啓聞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자, 곧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물어 보게 하였더니, 각 고을의 인민들이 과연 모두 묘종이 편하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소원에 따라서 水根이 있는 곳에는 묘종을 하도록 허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정사조)

위의 자료 A)는 태종 14년 경상도의 경우 이양을 하지 못해 실농을 하자 이듬해부터 이양을 금지시켰다는 것이고, 자료 B)는 세종 16년 신상이 이양법의 금지에 대해 토지를 적게 가진 자들에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토지를 많이 자들은 제초의 어려움 때문에 반드시 이양을 원한다고 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고 있고, 자료 C)는 경상도 고성에 거주하는 정치가 육전에 실려 있는 경상도와 강원도의 이양 금지는 부당하므로 각 도의 감사에게 민의 수렴한 뒤 이양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민들은 이양을 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조선전기 이양법은 경상도지역에서 토지를 많이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널리 실시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⁸⁾ 특히 수전의 비율이 높았던 부산지역의 경우는 이양법이 널리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양법은 수리시설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널리 행해질 수 있다.⁹⁾ 그러나 조선전기는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리시설

8) 15·16세기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광범한 이양법의 실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 된다(염정섭, <15·16세기 水田農法의 전개> 『韓國史論』 31, 1994).

9) 조선시대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대표적으로 참고된다(李光麟, 『李朝水利史研究』, 한국연구원, 1961 : 宮嶋博史, <李朝後期の 農業水利-堤堰(溜池)灌漑를 中心으로-> 『東洋史研究』 41-4, 1983 : 菅野修一, <李朝初期農業水利의 發展> 『朝鮮學報』 119·120, 1986).

이 정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각 군현마다 수리시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44개의 제언을 기록하고 있다. 곧이어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721개의 제언을 기록하고 있고, 『중종실록』에는 경상도 800개, 전라도 900개, 충청도 500개를 기록하고 있다.¹⁰⁾ 실제 『경상도속찬지리지』의 하면 부산지역은 동래현에 6개(馬隨谷·仇等竹里·客達里·竹山里錦絀洞·禾池里·釜古介)의 제언이 기록되어 있다.¹¹⁾ 따라서 조선전기 동래현은 제언 등의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양법을 실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장현은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 등에 제언 등의 수리시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장현은 수리시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천 수리를 통한 관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양법을 실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수전에서는 1년 1작의 방식을 통한 직파법(수경·건경)과 함께 이양법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조선전기 한전의 경종법은 『농사직설』에 의하면 1년 1작을 기본으로 하고, 토지가 적은 사람은 간종(間種)과 근경(根耕) 등을 통해 1년 2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 조선전기의 한전작물로는 조·대두(콩)·소두(팥)·보리·밀 등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작물은 1년 1작을 기본으로 하는데, 가을에 동절기 작물인 추맥을 파종하고 이듬해 봄에 하절기 작물인 콩 등을 파종하여 간혹 1년 2작

10) 『중종실록』 권46, 중종 18년 정월 경술조.

11) 6개의 제언의 간전 결수는 94결 31부로 기록되어 있다(『경상도속찬지리지』, 동래현).

12) 閔成基, <朝鮮前期의 麥作技術考-農事直說의 種麥法 分析-> 『朝鮮農業史研究』, 일조각, 1988.

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한전에서는 1년 1작을 기본으로 하고 1년 2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선전기 농업기술의 발달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는 민의 토지소유구조와 농업경영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조선전기는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호등을 편제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2-다〉

강원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제 여러 도의 호적을 정하되, 50결 이상은 大戶로, 20결 이상은 中戶로, 10결 이상은 小戶로, 5결 이상은 殘戶로, 5결 이하는 殘殘戶로 삼아, 이를 定式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는 26고을의 民戶의 합계가 1만 1천 5백 38호인데, 그 중에서 대호가 10호, 중호가 76호, 소호가 1천 6백 41호, 잔호가 2천 43호, 잔잔호가 7천 7백 73호로, 땅은 좁고 田地는 적사운데, 嶺西지방은 山田에서 생산물이 正田보다 배나 되고, 嶺外에는 또 어업과 소금의 이익이 있는데, 만약 다른 도의 만든 호적의 기준에 의거하여 戶役을 나누어 배정한다면 다만 구실을 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고와 安逸도 균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뒤로는 道内の 호적을 정하되, 20결 이하와 10결 이상으로써 중호로 삼고, 6결 이상으로써 소호로 삼고, 4결 이상으로써 잔호로 삼고, 3결 이하로써 잔잔호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74, 세종 18년 7월 임인조)

위의 자료에 의하면 조선전기는 토지소유규모에 따라 대호, 중호, 소호, 잔호, 잔잔호 5등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강원도의 호등과 농민층의 토지소유규모를 기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강원도의 호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세종대 강원도의 호등 현황

호 등	호당 결수	호 수	비 율(%)
대 호	50결 이상	10	0.1
중 호	20결 이상	71	0.6
소 호	10결 이상	1,641	14.2
잔 호	6결 이상	2,043	17.7
잔잔호	0결 이상	7,773	67.4
계		11,538	100.0

위의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강원도는 10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은 전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잔잔호가 전체 호수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는 토지소유구조에 따른 호등을 3결미만을 잔잔호, 3결에서 6결 미만을 잔호, 6결에서 10결 미만을 소호, 10결에서 20결 미만을 중호로 개정할 것을 허락받았다. 다음의 자료는 위의 강원도의 토지소유구조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2-라〉

A)황희·허조가 그 의논을 반박하여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우리나라가 태평스러운 세월이 오래 되어 인구가 날로 번창하나, 田地는 예전보다 더함이 없는 까닭으로, 10결 이상 경작하는 자는 모두 富豪의 백성들이오며, 3, 4결을 가진 자도 역시 적은 편입니다(『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1월 경자조)

위의 자료는 세종 20년 황희·허조가 조선은 10결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모두 豪富之民이고, 3~4결의 토지를 가진 자도 대개 또한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세종 18년의 강원도의 토

지소유구조와 유사하며, 조선전기 농민의 토지소유구조가 매우 불안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세종대의 자료에서도 '소민(小民)의 토지는 불과 1·2결인 자가 많다'고¹³⁾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민의 토지소유구조는 5등호인 잔잔호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¹⁴⁾

조선전기 부산지역 민의 토지소유구조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동래현이 1,723결이고, 기장현은 730결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동래현의 호수는 2백 90호이고(동평현의 호수는 1백 8호), 동래현의 전결은 1,723결이다. 기장현의 호수는 174호이고, 전결이 730결이다. 동래현의 호당 토지소유규모는 약 6결(4.44결 : 동평현을 포함하였을 경우)이고, 기장현은 약 4.12결 정도이다. 이는 토지소유규모에 따른 호등으로 분류하면 잔잔호에 불과하다. 즉 강원도의 토지소유구조와 유사하다. 따라서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토지소유구조는 하층 농민이 주류를 이루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인구수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호	남	여	계	호		구
기장현	174	397	620	1,017	174		397
동래현	290	1,151	1,265	2,416	290		1,151
동평현	108	342	285	627	108		342

13) 『세종실록』 권112, 세종 28년 6월 갑인조.

14) 이와 같이 조선전기 민의 토지소유구조는 1결에서 2결이 통상적인 경작규모라고 하고 있고(김태영, <조선전기 소농민경영의 추이>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조선후기에도 민의 평균 경작규모는 25부 또는 10두락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이영훈, <조선후기 8결작부제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29, 1981).

한편 동래현과 기장현의 인구는 앞의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호수는 174와 290인데 口數는 397과 1,511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도지리지』에는 호수가 174와 397인데 구수는 1,017과 2,416이다. 『세종실록지리지』의 호수와 구수는 『경상도지리지』의 호수와 남자 구수와 동일하다.¹⁵⁾ 그렇다면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구수는 『경상도지리지』에 나타나는 남자의 인구수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이렇게 남자만을 파악한 것은 남자가 국가의 역을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구수는 국역의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 기장현과 동래현, 그리고 동평현의 인구는 『경상도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1,017명, 3,416명, 627명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전기 부산지역 전체의 호당 인구수는 약 7.1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면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민은 어떤 농업경영방식을 실시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전기 과전법에서는 병작의 법적금지과 농장의 관행적 허용이라는 규정이 공존하고 있다.¹⁶⁾ 농장제는 직영지와 作介地 혹은 私耕地 다양한 농업경영형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주가에 인신적으로 예속되어 노비노동력을 이

15) 이와 같은 현상은 경상도 야로현(현 합천군 야로면)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 호 237·구 844인데, 『경상도지리지』에는 호 237인데, 남구 842, 여구 663 총 1505구로 기록되어 있고, 거제현의 경우도 『세종실록지리지』에 호 153·구 423인데, 『경상도지리지』에는 호 153인데, 남구 423, 여구 522 총 945구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방식은 부산지역의 군현과 동일하다.

16) 조선전기 농업경영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김태영, <조선전기 소농민경영의 추이>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 이호철, <조선전기 농업의 역사적 성격> 『조선농업경제사』, 한길사, 1986 : 이영훈,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1988 : 이영훈,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역사비평』 창간호, 역사문제연구소, 1988).

용하여 경영한다는 점이다. 병작제는 자영규모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주가가 비예속노동력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영형태이다. 따라서 병작제 아래서는 양인층, 천인층의 다양한 노동력이 작인으로 고용될 수 있다. 다음은 조선전기 농업경영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를 검토하여 보자.

〈2-마〉

A)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 또 하삼도는 땅이 비옥하고 물건이 풍부하여 朝士들의 農莊과 노복의 반이 넘으니, 이름은 付處라고 하나 실지는 서울에 사는 것과 같사옵니다(『세종실록』 권124, 세종 31년 4월 계축조)

B)좌찬성 황수신이 상언하기를 --- 신의 생각으로는 아산의 관둔전은 모두 24곳인데 그 17곳은 쓰지 못하는 전지라 여겨집니다. 신도 버려두고 경작하지 않았고, 혹은 진황하고 혹은 타인이 그 곳을 경작하였으나 지난 가을에는 쏘損하여 거두지 않았고, 단지 片田 5곳만을 아울러 경작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곳곳을 살피고 검사하였다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바꿔 받아서 나라를 메마르게 하고 자신을 살찌웠다고論하는 것은 저절로 헛된 일일 것입니다. 신이 만약 기름지고 비옥한 것을 얻어 농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다면, 회환하는 날에 즉시 奴婢를 모아서 그 땅에 살게 하여 耕耘을 할 것이지, 어찌 3년이 이르도록 한 노비도 사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 겨우 경작하였다는 5곳도 또한 모두 아울러 경작하고 다만 끊지 않은 것은 移葬을 기다린 것 뿐이었습니다(『세조실록』 권28, 세조 8년 4월 병술조)

위의 자료 A)는 하삼도에 朝士들의 농장과 노복들이 반이 넘는다

고 하고 있고, 자료 B)는 세조대의 황수신이 충청도 아산 일대의 관유지를 횡령하였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국왕에게 극구 해명하는 내용으로 농장을 설치하였다면 노비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경작에 종사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양반관료들의 사적 소유지는 노비노동에 기초한 농장제가 기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병작제는 좌정승 河崙 등이 민폐를 제거하는 조목 중에 田地의 병작은 鰥寡孤獨으로 子息이 없고, 奴婢가 없는 자로서 3·4결 이하를 경작하는 자 이외는 일질 금지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병작제를 금지시키는 조치이지만 한편에서는 병작제를 허용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다음의 자료는 조선전기 병작제가 국가적 의도와는 달리 일찍부터 실시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바>

좌정승 河崙 등이 민폐를 제거하는 몇 가지 조목을 올리었다.
 --- 또 품관과 향리들이 전토를 널리 점령하고, 流亡人을 불러들여 병작하여 그 반을 거두니, 그 폐단이 사전보다도 심합니다. 사전 1결에서는 풍년이 든 해에만 2석을 거두는데, 병작 1결에서는 많으면 10여 석까지는 취합니다. 流移者는 이것을 빙자하여 役을 피하고, 影占者는 이것을 빙자하여 容隱하니, 賦役이 고르지 못한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11월 기묘조)

위의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의 품관과 향리들이 유망민을 끌어들여 병작인으로 확보하자 국역의 부담층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다. 조선전기 국가에서 병작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역의 향리층이 병작경영을 주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병작제는 조선전기 농업

경영방식으로 널리 존재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병작경영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2-사〉

平山都護府使 鄭次恭이 상서하기를, --- 신은 그욕이 생각하던대, 우리 나라는 토지가 협소하여 전지가 없는 백성이 10분의 3에 가깝고, 전지가 있는 자가 연고가 있어서 경작할 수 없으면 인리와 족친이 병작하여 나누는 것이 곧 민간의 常事입니다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정월 병자조)

위의 자료에 의하면 병작은 토지소유자가 유고하여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되면, 주변의 이웃이나 친척들이 그 토지를 병작으로 경작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병작경영은 노동력이 상실된 계층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세종 6년 민간에서 토지매매 허용조치 이후 병작제가 점차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5세기는 농장제와 병작제가 양립되어 존재하였지만, 16세기 이후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병작제가 확대되어 가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다.¹⁷⁾ 그런 측면에서 부산지역의 농업경영방식도 잔잔호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병작경영과 농장경영이 상존하다가 점차 병작경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부산지역의 토지소유는 수전과 한전에서 1년 1작과 1년 2작이란 농업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사적소유가 널리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본으로 농업경영방식은 농장제와 병작경영을 실시하고 있었고, 점차 병작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추

17) 김성우, 〈조선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8, 1995.

세였다.

Ⅲ. 田稅의 變動과 推移

앞에서 부산지역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 전기의 부산지역에는 동래현, 동평현, 기장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 지역의 토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전세가 어떻게 수취되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산지역 군현의 전결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조선전기 부산지역 군현의 전결 수

군현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증보문헌비고		
	수 전	한 전	수 전	한 전	도계(군계)	수 전	한 전	계
기장현			水旱田相半		730			
동평현								
동래현			水田八分之五少		1,723			
경상도					301,147 (261,438)			430,000

위의 <표 4>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산지역 군현의 전결수는 경상도 지리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종실록지리지에 기장현이 730결, 동래현이 1,723결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장현의 전결, 즉 토지는 수전(水田=논)과 한전(旱田=밭)의 비율을 반반으로 기록하고 있고, 동래현의 경우는 수전이 5/8가 조금 부족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조선전기 전체 토지가 1,713,726결인데, 이중 수전의 비율이 27.9%로 파악되고 있다.¹⁸⁾ 그리고 경상도의 전체 토지가 261,438결인데, 이중 수전의 비율이 39.3%로 조선전기 전체의 비율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조선전기 기장현과 동래현의 수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기장현과 동래현의 田結은 세종 14년에 편찬된 팔도지리지의 편찬 때 파악된 것이었다. 이는 공법의 제정 이전, 즉 과전법체제하의 양전으로 파악된 전결이다. 과전법체제하에서 경상도지역의 양전은 공양왕 2년 기사양전,²⁰⁾ 태종 5년 을유양전,²¹⁾ 세종 11년²²⁾ 등의 시기에 각각 이루어졌다. 기사양전에서는 경기를 제외한 6도에서 實田이 491,342결, 荒遠田이 166,643결이 확보되었고, 특히 을유양전으로 이듬해인 태종 6년에는 전국적으로 30만결의 전결수가 확보되었을 만큼 많은 전결이 증대되었다.²³⁾ 그러나 세종 11년 경상도지역은 예전, 진주, 창녕, 함양, 선산, 경주, 대구, 김해, 순흥, 의성, 금산, 용궁 등에 양전경차관을 파견하여 양전하였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장현과 동래현의 전결은 기사양전과 을유양전 때 파악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기장현과 동래현의 전결은 어떠한 수취제도 하에서 존재하고 있었을까? 조선전기의 전세는 고려 말 공양왕 3년(1391)에 제정된 과전법과 세종 26년에 제정된 공법이라는 제도 하에서 수취되었다.

18) 이호철, <토지파악방식과 전결> 『조선전기농업경제사』, 한길사, 1984.

19) 이호철, 『위의 책』.

20)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녹과전 공양왕 3년 5월조.

21)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9월 정유조.

22) 『세종실록』 권46, 세종 11년 10월 계미조.

23)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5월 임진조.

과전법에서는 공전(국가의 수조지로 지정된 토지)·사전(개인의 수조지로 지정된 토지)을 막론하고 1/10조에 의거하여 1결(상등전=2,000평·중등전=3,000평·하등전=4,500평)당²⁴⁾ 수전에서는 조미(糙米), 한전에서는 황두(黃豆) 30두(=2석)의 조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²⁵⁾ 다만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은²⁶⁾ 10등급으로 나누어 이를 울로 삼아, 수확이 1분 감소하면 조 1분을 감하고, 수확이 2분 감소하면 조 2분을 감하고, 차례로 감하다가 수확이 8분 감소하면 조의 전액을 면제하였다.²⁷⁾

과전법체제하의 하 3도 각 군현의 전세는 원래 公田으로 국가재정에 편입되어 결당 2석의 전조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태종대에 이르러 京畿私田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전의 하 3도 移給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²⁸⁾ 결국 태종 17년 사전인 과전 1/3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移給하였다.²⁹⁾ 사전은 이를 5등분하여 下三道인 1/5는 충청도, 그 2/5를 경상도와 전라도에 각각 移給하였다.³⁰⁾ 이에 따라 경상도지역의 군현에는 상당한 규모의 사전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의 하 3도 이급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자 세종은 사전을 경기도에 환급하게 됨으로써 다시 사전은 외방에 설정되지 않았다.³¹⁾ 이렇듯 경상도지역의 일부 군현에는 공전과 사전

24) 박홍수, <도량형제도> 『한국사-조선전기의 경제구조』 24, 탐구당, 1994.

25)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녹과전 공양왕 3년 5월조.

26) 조선전기의 답험손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金泰永, <科田法上の踏驗損失과 收租> 『朝鮮前期土地制度史研究』, 지식산업사, 1983 : 강제훈, <조선 태종세종대 전세의 부과와 수취> 『한국사학보』 6, 1999).

27)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답험손실 공양왕 3년 5월조.

28) 한영우, <태종·세종조의 대사전시책> 『조선전기사회경제사연구』, 을유문화사, 1983.

29)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7월 을해조.

30) 『龍飛御天歌』 권8, 72장.

31)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정월 갑신조 :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정월 기축조.

이 반복되어 지정되곤 하였다. 이에 따라 기장현과 동래현의 전결은 조선 초기, 즉 태종 17년 이전에 공전으로 편제되어 매 결 1/10의租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다만 태종 17년 이후부터 세종 13년 이전에는 사전의 하 3도 이급으로 양반 관료의 科田, 즉 사전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동래현과 기장현의 전세는 일정 시기 동안에 중앙의 양반관료층의 수조지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양반관료층의 수조지, 즉 사전으로 설정되면 공전보다 수취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 부산지역의 민들도 그와 같은 수취부담을 졌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과전법의 조세규정은 세종 26년 새로운 전세제도인 공법으로 개혁되었다.³²⁾ 공법하의 결의 면적은 비옥도에 따라 1등전 약 3,000평에서 6등전 약 12,000평까지 차등이 있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世宗 26年 貢法단계의 結의 면적³³⁾

等 田	畝	계산(周尺)	面積(결)
1등전	38畝	(4.775×100)2	2,986.6평
2등전	47畝 7分	(5.179×100)2	3,513.2평
3등전	54畝 2分	(5.703×100)2	4,259.8평
4등전	69畝	(6.434×100)2	5,423평
5등전	95畝	(7.550×100)2	7,466.5평
6등전	152畝	(9.550×100)2	11,946.4평

32) 김태영, <조선전기 공법의 성립과 그 전개>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 이재룡, <국가제정> 『한국사』 24, 탐구당, 1994.

33) 박홍수, <신라 및 고려의 양전법에 관하여> 『학술원』, 1972에서 재인용.

세종 26년 공법의 수조율은 田分 6등법과 年分 9등법에 따라 1/20 조에 의한 1결당 최고 20두~최하 4두가 수취되었으므로 전세의 수취액은 과전법처럼 동일하였다.³⁴⁾ 공법체제 하의 민의 부담은 농작물의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상정한다면 조세가 1결에 20두이므로 과전법 하의 전조 30두보다 적다. 그것은 貢法の 제정으로 1결의 면적이 己巳量田(약 2,000평) 때보다 상대적으로 증대되었지만(50%), 조세수취량이 1/20조(1결=20두)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법 하의 전세는 과전법하의 전세보다 산술적으로 훨씬 경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이와 같은 공법은 세종 26년 하 3도 6개 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난 이후 세종 32년과 세조 8년에 전라도, 세조 7년에 경기도, 세조 8년에 충청도, 세조 9년에 경상도, 성종 2년에 황해도, 성종 6년에 강원도, 성종 17년에 평안도, 그리고 성종 20년에 함경도에서 마지막으로 양전을 시행하여 순차적으로 공법을 실시하였다. 그 후 성종 20년에 경기도와 충청도, 성종 24년에 전라도, 경상도에 양전을 다시 실시하여 연산군 1년(1495)에 완료하였다.³⁶⁾

공법 시행이후 기장현과 동래현의 전세는 다시 공전으로 파악되어 수취되었다. 하지만 기장현과 동래현의 전세는 한양으로 운송되던

34) 年分 9등에 따른 조세수취액.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20두	18두	16두	14두	12두	10두	8두	6두	4두

35) 공법 이후 전세의 부담은 산술적으로 경감되었지만 1승의 양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따라 산술적 부담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세종 28년에는 양기의 용적을 새롭게 제정하였기 때문이다(李宗峯, <결부제의 변화와 성격>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2001).

36) 김태영, <조선전기 공법의 성립과 그 전개>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上納米에서 下納米로 책정되어 지방에 유치되었다. 즉 기장현과 동래현은 전세의 수납처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3-가〉

A)호조에서 경상도 관찰사李克培의 啓本에 의거하여 아리기를, --- 南海縣은 방어가 가장 긴요합니다. 그런데도 糧餉이 결핍되고, 그 전세도 해마다 바다를 건너 金遷倉에 수납하므로 백성이 그 피해를 받으니, 금후로는 熊川에 수납하여 倭料로 이바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州倉에 수납하여 軍需로 삼으소서(『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2월 계미조)

B)詳定廳에서 아리기를 --- 또 南海와 巨濟 두 고을의 田稅를 이 앞서는 州倉에 납입하였는데, 해도의 작은 고을에 해마다 수납하여 많이 쌓는 것은 未便하니, 그 조미 6백 석을 熊川으로 납입하여 倭料로 충당하고, 上道의 여러 고을의 倭料를 빼내면, 쌀 6백 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성종실록』 권18, 성종 3년 5월 임인조)

C)司憲府 大司憲 李愬長 등이 상소하기를, --- 경상도 조세 수입의 태반은 왜인을 응접하는 비용에 소모되므로 바닷가 여러 고을의 倉廩이 일제히 비게 되어서 지금은 上道 주현 쌀을 옮겨서 모자라는 것에 보충합니다. 倭料라면 그냥 충분한데 軍資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근자에는 조정에서도 또한 그 폐단을 염려하여 조세의 수량을 반으로 나누어 州에 다 留置해 주도록 하였으나, 창고가 비어 있는 것은 예와 같습니다. 앞뒤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바닷가의 여러 고을 및 수로로 통행하여 가히 실어 나를 만한 여러 고을의 전세 미곡을 수년만 한정하여 상납하지 말고 모두 주창에 실어다 놓고 군수에 충당하게 하고 왜료에도 보충하게 하여,

주현으로 하여금 족히 스스로 보전하게 하여, 館穀이 원匱乏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성종실록』 권48, 성종 5년 10월 경술조)

위의 자료 A)는 경상도 남해현의 전세를 중앙으로 상납하기보다는 하납할 것을 건의하고 있고, 자료 B)는 남해현과 거제현의 전세를 왜료로 하납하고 있고, 자료 C)는 성종 5년에 경상도의 조세 절반이 왜료로 충당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15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경상도 군현의 전세는 상납도 되지만 왜료를 충당하기 위해 하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경상도 군현의 전세는 倭料로 충당하기 위한 하납의 장소가 지정되고 있음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3-나>

A)호조에서 아뢰기를 貢案에는 倭料가 어느 고을에는 몇석이라 고만 적혀 있고 거두어들이는 都會官이 없으므로 그 고을에서 스스로 거두었다가 도로 백성에게 주어 浦所에 실어가서 바치게 하니 백성들에게 폐해가 미칩니다. 이제부터는 熊川을 도회관으로 하여 웅천과 晉州, 金海, 昌原, 宜寧, 咸安, 昆陽, 巨濟, 固城, 泗川, 南海, 河東, 丹城, 山蔭, 三嘉, 鎭海, 漆原, 星州, 草溪, 高靈을 여기에 소속시키고, 東萊를 도회관으로 하여 동래와 慶州, 密陽, 垞丘, 梁山, 機張, 彥陽, 玄風, 昌寧, 靈山, 長鬐를 여기에 소속시키고, 蔚山을 도회관으로 울산, 興海, 迎日, 淸河를 여기에 소속시키소서, 그리고 모두 전세의 예에 따라 稅吏를 정하고 佃夫가 스스로 도회관에 바치게 하되, 풍년이면 그 세에 여유가 있을 것인데. 울산은 營, 鎭이 있는 것이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니 웅천에 소속된 고을들은

김해에서 받아들이고, 동래에 소속된 고을들은 양산에서 받아들였다가 왜료가 모자랄 때를 당하거든 임시하여 가져다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성종실록』 권55, 성종 6년 5월 계축)

B)대사헌 金永濡는 아뢰기를, 경상도는 왜노가 왕래하는 땅이 되는데, 糧穀의 저축이 많지 않으므로, 만약 李施愛의 亂과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한 縣에서 사졸이 하루 동안 먹을 것도 辦備할 수 없으니, 다른 도의 州倉의 세를 서울로 운송하고, 경상도의 세는 전부 주창으로 들어서, 군량의 저축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世祖께서 일찍이 대창의 곡식을 百萬億에 이르게 하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곧 대창을 增修하겠는데, 이 일을 마땅히 여러 정승에게 의논케 하였다(『성종실록』 권77, 성종 8년 윤 2월 무신조)

C)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傳教를 받기를, ‘경상도의 軍需가 넉넉지 못하니, 上道の 전세는 京中으로 納入하고, 中道 이하의 전세는 각기 州倉에 수납하자는 절목을 商議하여 아뢰라’고 하셨으므로, 신 등이 자세히 조사하니, 본도의 저축된 군수가 과연 넉넉지 못합니다. 청컨대 군수가 두루 족하여질 때까지 限하여 尙州·善山·安東·醴泉·榮川·金山·知禮·豐基·開寧·龍宮·奉化·仁同·聞慶·咸昌·軍威·義城·比安·禮安 등 18고을은 軍資 전세를 이전대로 上納하고, 慶州·晉州·星州·昌原·金海·寧海·密陽·靑松·大丘·陝川·咸陽·草溪·淸道·永川·興海·蔚山·梁山·咸安·昆陽·盈德·慶山·東萊·固城·巨濟·南海·居昌·三嘉·宜寧·迎日·長鬐·靈山·昌寧·泗川·機張·熊川 등 48고을은 군자 전세를 각각 邑倉에 납입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성종실록』 권78, 성종 8년 윤2월 병인조)

위의 자료 A)는 웅천, 동래, 울산의 3읍을 倭料 수납의 都會로 해서, 여기에 속하는 제읍을 정하고, 소속 제읍의 백성은 스스로 도회의 관에 수납하게 하고 있고, 자료 B)는 경상도 모든 군현의 전세를 주창으로 납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고 있고, 자료 C)는 경상도 상도 군현의 전세는 서울로 납입하고 동래, 기장 등의 하도는 邑倉으로 납입한다는 것이다. 倭料의 액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종 4년 貢案에 책정된 수가 15,000여석인데 경상도에서 1년에 지급되는 것이 22,000여석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조선전기 기장현³⁸⁾과 동래현의 전세는 중앙으로 상납되기 보다는 하납되어 군수 혹은 왜관 소재지인 동래로 바치게 하여 대일공무역가 및 왜사접대비인 왜료에 사용되었다.³⁹⁾

조선전기 경상도의 전세는 기본적으로 수전에서 미곡, 한전에서 잡곡 등을 납입하지만, 기본 물색 대신에 포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田稅貢物이라 한다.⁴⁰⁾ 전세를 포로 수납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손실법을 적용하지 않아 정액전세였지만, 태종 9년부터 稅布田에도 손실법을 적용하였다.⁴¹⁾ 다만 布의 가격변동에 의해 稅布의 신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²⁾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37) 『중종실록』 권8, 중종 4년 3월 갑인조.

38) 기장현의 전세는 3월까지 수봉한 후 4월에 無知浦에서 해선에 실어서 釜山鎭 釜倉에 납부하는 하납의 절차에 따라다(윤용출, <조선후기 기장현의 삼정운영> 『한국민족문화』 8, 1996).

39) 김동철, <17·18세기 대일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항도부산』 10, 1993 : 윤용출, <조선후기 기장현의 삼정운영> 『한국민족문화』 8, 1996.

40) 경상도 군현의 전세공물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41)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임술조.

42) 조선전기의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李正守, <朝鮮前期의 米價變動> 『釜大史學』 17, 1993).

<3-다>

- A) 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 우리 태조께서 창업하시어 대통을 전하고, 常經을 세우고 기강을 베풀어, 은나라와 주나라의 조법과 철법의 뜻을 참작하여 土田의 손실법을 세워, 수전 1결마다 造米 30두를 거두고, 한전 1결마다 잡곡 30두를 거두고, 또 밭 1결에 布 한 필을 거두어 一代의 成憲을 만들고, 처음부터 공법의 의논이 없었습니다(『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정묘조)
- B) 의정부 참찬 河演이 건의하기를, --- 영의정 黃禧·判院事 安純·찬성 申槩·호조 판서 沈道源 등을 불러 하연이 올린 전제를 의논하게 하니, --- 또 아뢰기를, “민간의 布價가 쌀로는 5, 6두이며, 콩으로는 10여 두에 불과하오는데, 전세로 공납하는 베는 쌀이 15두, 콩은 30두에 준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 같사오니, 다시 쌀은 10두로, 콩은 20두로 고쳐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세종실록』 권73, 세종 18년 6월 갑신조)
- C) 이보다 앞서 輪對에서 藝文館 奉敎 安處良이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바치는 國用布子는 舊法에 매 1필을 黃豆 30두로 준하여 세 내던 것을 뒤에 19두로 고쳤었는데, 또 12두로 고쳤다가 이제는 8두가 되었으나, 또 베를 바칠 때에 輸布價米 1두를 아울러 바치므로 실지로 덜어진 것은 6두인데, 이것으로는 1필을 짜는 데에 드는 것을 바꾸기에도 오히려 부족하여,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예종실록』 권7, 예종 1년 8월 정묘조)
- D) 詳定所에서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바치는 田稅布價는 매 1필을 黃豆 10두에 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예종실록』 권7, 예종 원년 9월 갑신조)

위의 자료 A)는 태조대의 전공을 田 1결에 布 한 필을 거두었다고 하고 있고, 자료 B)는 세종 18년에 이르러 전세로 공납하는 布는 미

가 15두, 두가 30두에 준한다는 것은 과다하므로 미는 10두로, 콩은 20두로 고쳐 정하라고 하고 있고, 자료 C)는 경상도에서 바치는 國用布子는 舊法에 매 1필을 黃豆 30두로 준하여 세 내던 것을 뒤에 19두로 고쳤었는데, 또 12두로 고쳤다가 이제는 8두가 되었으나, 또 베를 바칠 때에 輸布價米 1두를 아울러 바치므로 실지로 떨어진 것은 6두이므로 더 감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자료 D)는 경상도에서 바치는 전세포가는 매 1필을 黃豆 10두에 준한다는 것이다. 위의 자료를 종합할 때 경상도에서 바치는 전세공물인 포의 가치는 잡곡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경상도 군현의 전세공물인 포의 수납은 계속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기장현과 동래현은 과중한 전세공물의 수취부담을 앓고 있었다.

한편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민들은 전조를 수납하는 과정에도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전세는 몇 단계의 운송절차가 있었다. 군현의 주창에 납부하는 전세는 주창의 납주로 종결되었다. 상납하는 전세는 집결지인 浦所에 납부하게 하고, 조운 조직을 이용하여 서울에 운송하여 해당 창고에 납입하여 된다. 경상도지역은 포소까지 납부부담도 문제였다. 경상도의 경우 문경의 초점을 넘어 충주의 가흥창까지 납입하였는데, 초점을 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류를 가흥장에 까지 가지고 와서 이를 다시 미곡으로 교환하여 납부하기도 하였다.

전세의 수납은 약간의 추가분을 징수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3-라〉

領事 申叔舟가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세를 거둘 때에 耗米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받는데, 세미 1섬에 혹은 모미를 5, 6되씩 거두고 혹은 1말을 거두어 많고 적음이 고르지 아니하

므로, 근자에 엄하게 법을 세워서 모미를 함부로 거두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관리가 법을 두려워하여 상납할 즈음에 모미를 거두지 않게 되니 稅吏가 채워서 바치지 못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화가 일족에게 미치며, 漕卒도 그 해를 입습니다. 米麵은 되질하는 데에 따라 곧 축이 나는데, 하물며 먼 길에 운반하는 나머지 비록 盜用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어찌 축이 나지 아니하겠습니까? 京倉에 바칠 때에는 倉吏가 수납한 뒤에 축이 날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모미를 거두니, 세리와 조졸의 원망이 진실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祖宗朝에 稅吏가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남는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좋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매우 괴로워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저 세리들이 어찌 모두 도용하여 매양 부족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생각건대 반드시 법이 엄하여 모미를 거두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예전에 10말을 1斛으로 하고 모미 7되를 거두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법을 마련하여 역시 1곡에 모미 7되를 거두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 때에 耗米法이 있었는가? 하자, 신숙주가 말하기를, “법은 없었으나, 다만 넉넉하게 세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폐단이 없었습니다(『성종실록』 권49, 성종 5년 11월 기사조)

위의 자료에 의하면 성종대의 모미 징수가 합법화 된 것은 아니지만, 1석에 5, 6승에서 1두까지 관행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1석에 7되로 하자는 것이다. 조선전기 서울로부터 전세의 운송과정이 거리상 멀리 위치하였던 부산지역은 보다 과중한 모미가 수취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전세는 경창으로 수납하는 상납미로 분류되었다가 성종 6년부터 倭料를 충당하기 위한 하납미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전세는 미와 곡물로만 납입한 것은 아니고, 미와 곡물 대신에 전세공물로도 납입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 민의 전세는 국가에서 규정한 액수만 부담한 것은 아니었고 운송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전세의 부담액 실제보다 과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貢物收取의 樣相

공물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민이 각종 생산물을 바치는 현물세의 형태로 수취제도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품목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에서도 그러한 형태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⁴³⁾ 따라서 조선전기 현물세인 공물이 부산지역은 어떤 구조 하에 있고, 어떤 물품이 수취되었는가를 통해 부산지역의 경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공물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는 태조대부터 시작하여 태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음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4-가>

A) 貢賦詳定都監에서 상서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문득 국가를 차지하시고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맨 먼저 신 등에게 명하여 고려 왕조 貢案에서 歲入의 다과와 歲出의 경비를 상고하여 손익을 짐작하여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하고 일정한 법을 세우게 하셨으니, 실로 백성의 복인 것입니다. --- 신 등이 삼가 예전 田籍을 상고하여 토지의 물산을 분변하여, 공부의 등급을 마련해서 전의 액수를 적당히 감하여 일정한 법으로

43) 조선시대의 공물제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윤용출, <부세제도> 『한국역사입문』 2, 풀빛, 1996).

정하고, 그 철따라 나는 물건[時物]으로써 일정한 공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일정한 공부의 외에 列錄하고, 이를 명칭하여 別貢이라 했으니, 橘과 柚子의 유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위에서 取하는 것을 '賦'라 하고 아래에서 바치는 것을 '貢'이라 하여, 이를 취하되 그 제도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를 바치되 그 법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인이 貢賦를 만든 뜻입니다. --- 지금 정한 바의 공부의 역수를 갖춰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서 狀啓와 함께 올리오니, 비옵건대,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영구히 成法으로 삼게 하소서(『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10월 경신조)

B)처음으로 濟州의 貢賦를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주가 바다를 격해 있어 민호의 공부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였으니, 大戶·中戶·小戶를 分揀하여 그 토산인 마필로 하되, 대호는 大馬 한匹, 중호는 中馬 한匹, 소호는 5호가 아울러 중마 한匹을 내게 하여, 암수를 물론하고 탈 만한 마필을 가려서 공부하게 하고, 기축년 봄부터 모두 육지에 내보내게 하소서(『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정사조)

C)사헌부에서 상서하였다. 글은 이러하였다. --- 우리 나라 조정에서도 토질에 따라 공부를 거두는데, 그 제도는 오래됩니다. 오로지 동계·서계 두 계만은 지난 前朝 때에 있어서 여러 번 병란을 겪었으므로 주·군이 소란하여 전지가 황폐하였습니다. 백성을 옮겨 진에 입거시켜서 守禦에 이바지하게 하고, 잠정적으로 日耕의 법을 만들어 그 수조를 관대하게 하여서 민생을 넉넉하게 하였으며, 貢賦의 법은 미처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조가 개국하여 민생을 휴양시켜 편안하게 살게 한 지 20여 년입니다. 이미 사람이 많아지고 이미 생활이 넉넉하여져 田野가 날로 개간되고 經界가 이미 바루어졌으니, 공부를 시행하여 主上을 奉供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1월 신사조)

위의 자료 A)에 의하면 태조 즉위년에 공물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한 후, 자료 B)의 태종 8년에는 제주도, 자료 C)의 태종 13년에는 동계와 서계에서 공부제가 마련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초기에 공물에 대한 수취의 기반이 전국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공물은 田貢과 土貢으로 구분되었다. 전공은 전세를 대신하여 토산으로 납부하는 물품, 즉 전세공물을 말하고, 토공은 각 지역의 특수한 생산물이다. 전공은 포와 곡물이 주류를 이루었고, 토공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물, 수공업품 등이 중심이었다. 이와 같은 공물은 貢案⁴⁵⁾이라는 일종의 징세 대장에 의해 수취되고 있었다.

공안은 앞의 자료인 『태조실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공안은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므로 조선은 태조 즉위초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여 공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⁴⁶⁾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친 후에 세조 10년 국가재정의 세출예산표로 할 수 있는 橫看을 제정하여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졌고,⁴⁷⁾ 성종 1년에는 不産貢物의 폐단을 시정하면서 공안이 완성되었다.⁴⁸⁾ 이후에도 공안은 대동법이 실시되기

44) 田川孝三, 〈李朝貢物考〉 『李朝貢物制의 研究』, 東洋文庫, 1964 : 박종진, 〈高麗末 朝鮮初 貢物制의 改綴과 그 性格〉 『韓國學研究』 6, 1997.

45) 공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田稅·漁稅·鹽稅·匠人稅· 상업稅· 선세·家基稅, 신포세, 공물, 진상, 노비신공, 요역 등 모든 종류의 경상세역을 포함하는 총세입표라고 해석(田川孝三, 〈貢案과 橫看에 대하여〉 『李朝貢納制의 研究』, 동양문고, 1966)하고 있고, 이에 반해 金玉根은 공물과 진상을 주체로 하고 전세공물 조·왜료 등이 부가적으로 수록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貢案〉 『朝鮮王朝財政史研究(1)』, 일조각, 1993).

46)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10월 경신조.

47)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8월 갑신조.

48) 『성종실록』 권3, 성종 1년 2월 갑자조.

이전까지 개편은 있었지만 큰 틀은 유지되었다.

공간에 근거한 공물의 분정은 공부상정도감에서 ‘옛날의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토지의 생산을 헤아려 그 貢賦를 정하고’ 혹은 ‘예전 田籍을 상고하여 토지의 物産을 분변하여, 공부의 등급을 마련한다’⁴⁹⁾고 하지만, 상세한 설명은 없다. 태종대에 이르러서는 ‘田地의 數에 따라 貢物의 額數를 정하여, 해마다 가을과 겨울이 바뀌는 환절기에 거두어 상납하게 하되, 이를 恒式으로 삼으소서. 만약 부득이하여 특별한 예로 거두게 된다면, 그 값을 주고 貿易하여 백성의 業을 후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다.⁵⁰⁾ 또 성종대의 자료에는 ‘무릇 공부와 요역은 인민의 소경전결의 수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⁵¹⁾ 따라서 조선전기 공물은 토산공물에 따라 토지의 다소를 기준으로 분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정해진 공물은 ‘국가에서 貢賦를 약정하여 줄일 수 없도록 版案에 실려 있습니다’고⁵²⁾ 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하지 않았고, 다만 국왕의 특은에 의해서만 허용되었다. 따라서 공물은 민호의 증감에 따라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특히 흉년과 기근으로 민이 유망하여 민호가 감소하게 되면 기존의 백성이 소정의 공물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민호의 부담은 과중하였다.⁵³⁾

이때 중앙정부는 각 군현의 토산물을 전결·호구 등 부담 능력을 참작하여 군현단위로 分定하였다. 각 군현에서는 이를 관내 민호의

49)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10월 경신조.

50)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계사조.

51) 『성종실록』 권4, 성종 원년 4월 병자조.

52)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7월 갑오조.

53) 田川孝三, 〈李朝貢物考〉 『李朝貢納制의 研究』, 동양문고, 1964.

전결을 참작하여 관내의 가호에 부과 징수하였다. 각 군현에서는 징수한 공물을 모아 수령의 책임하에 중앙 각사에 일괄 상납하였다. 공물은 중앙 각사에 상납하는 공물 이외에 지방의 감영·병영·수영·제진·군현 등 영·진·읍의 각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관내의 민호에게 부담하는 지방공물이 있다.

공물의 내용과 종류에 대해서는 조선전기에 편찬된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지리지에 수록된 공물은 농산물·수산물·수공업제품·광산물·축산물·과실·약재·鳥獸類 등 당시에 생산되는 모든 물품이 포함되며, 그 물종이 수백종에 달한다.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공물을 살펴보기 전에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각 도별 토산공물의 종류를 살펴보자.

〈표 6〉 각 도별 공물의 현황⁵⁴⁾

도 별	공 물	약 재	약재종양	계
경기도	50	120	21	191
충청도	89	120	20	229
전라도	112	138	8	258
경상도	81	173	29	283
황해도	84	167	21	271
강원도	91	125	12	228
평안도	44	85	9	138
함길도	26	101	4	131

위의 〈표 6〉에서 경상도의 공물은 283종이다. 경상도의 공물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종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54) 田川孝三, 〈李朝貢物考〉 『李朝貢納制의 研究』, 동양문고, 1964에서 재인용.

전기 부산지역의 공물은 이 시기에 편찬된 지리리의 토산물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들을 살펴보자.

<4-나>

1-A)공부 : 저포(紵布)·목면(木棉)·정오승포(正五升布)·상중미(常中米)·조미(造米)·전미(田米)·꿀(淸蜜)·들기름(法油)·촉밀(燭蜜)·참기름(眞油)

토산공물 : 밤(黃栗)·노루가죽(獐皮)·녹피(鹿皮)·점찰피(占察皮)·진자(榛子)·목기(木器)·어피(魚皮)·상어(沙魚)·말린조개(乾蛤)·살랭이가죽(狸皮)·여우가죽(狐皮)·소당(篠蕩)·표고(藜蒿)·굴·석류·오해소·미역(簍)·우뿔가사리(牛毛)·김(海衣)·참가사리(細毛)·생포(生鮑)·진복(鎭卜)·건록(乾鹿)·건장(乾獐)·녹포(鹿脯), 약재(藥材) ; 천문동(天門冬)·맥문동(麥門冬)·방풍(防風)·후박(厚朴)·백편두(白篇豆)·녹용(鹿茸)·생지황(生地黃)·조어골(鳥魚骨), 염분(鹽盆) 25(『경상도지리지』, 동래현)

1-B)공부 : 목면·정오승포·상면자(常綿子)·상중미(常中米)·조미·전미·진맥(眞麥)·공유(貢油)·꿀(淸蜜)

토산공물 : 들기름(法油)·촉밀(燭蜜)·우뿔가사리(牛毛)·진자(榛子)·밤(黃栗)·저모(猪毛)·어교(魚膠)·전포(全鮑)·지지(紙地)·장피(獐皮)·여우가죽(狐皮)·점찰피(占察皮)·어피(魚皮)·표고버섯(藜蒿)·말린조개·상어(沙魚)·김·참가사리, 약재(藥材) ; 맥문동·방풍, 염분 11 ; 공염분(貢鹽盆) 8·두모포군수염분 2·사염분 1(『경상도지리지』, 기장현)

1-C)공부 : 목면·정오승포·멩쌀(更米)·조미·전미·콩

토산공물 : 꿀·참기름·들기름·미역·추자(楸子)·밤·지초(芝草)·종이·어교(魚膠)·전포(全鮑)·상어가죽·말린조개·김·우뿔가사리·청

각·황합(黃蛤)·해삼·대구어·청어·방어·표고·염분 30좌(『경상도 지리지』, 동평현)

2-A)토공 : 가는대(篠)·왕대(蕩)·종이·표고버섯(藁)·굴·석류·비자·오해조·미역·우뭇가사리·참가사리·김·조곽(早藿)·청각(靑角)·해삼·말린조개·생포(生鮑)·상어(沙魚)·대구(大口魚)·청어·방어·어교(魚膠)·살랭이가죽·여우가죽·노루가죽·사슴가죽·점찰피·어피(魚皮), 약재(藥材) : 천문동·맥문동·방풍(防風)·후박(厚朴)·녹용(鹿茸)·오어골(烏魚骨), 염분(鹽盆) 3(『세종실록지리지』, 동래현)

2-B)토공 : 꿀(蜂蜜)·밀(黃蠟)·표고버섯(藁膏)·김·우뭇가사리·참가사리·말린조개·상어(沙魚)·전포(全鮑)·종이·노루가죽·여우가죽·점찰피·어피(魚皮), 약재(藥材) : 맥문동·방풍, 염소(鹽所) 1(『세종실록지리지』, 기장현)

3-C)점찰어(占察魚)·대구(大口魚)·청어·홍어·전어·은어(銀口魚)·농어(鱸魚)·광어·전복(鰓)·석화(石花)·홍합(紅蛤)·오해조·미역·김·해삼·곤포(昆布)·다시마(塔土麻)·석류·유자·자기·도기(陶器)·죽전(竹箭 ; 蘇山에서 생산)·표고(香蕈)·염(鹽)(『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토산)

3-C)광어·점찰어·청어·대구·홍합·전복·홍어·상어(鯊魚)·전어·고등어(古刀魚)·김·미역·가사리(加士里)·참가사리·해삼·석류·감(柿)·유자(柚)·오해조(烏海藻 ; 가을포에서 난다)·죽(竹)·방풍(防風)(『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기장현 토산)

위의 세 지리지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경상도지리지』에서는 공부와 토산공물을 구분하고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토산으로 정리하고 있다. 둘째, 동평현⁵⁵⁾은 『경상도

55) 東平縣은 고려 현종 무오년에 梁州 任內에 붙었는데, 조선 태종 5년에 동래현에

지리지』에 공부와 토산공물이 기록되어 있지만,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⁵⁶⁾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공부는 동래현의 경우 저포·목면·정오승포·상중미·조미·전미·꿀·들기름·촉밀·참기름 등의 8종류이고, 기장현의 경우 목면·정오승포·상면자·상중미·조미·전미·진맥·공유·청밀 등의 9종류이고, 동평현의 경우 목면·정오승포·땃쌀·조미·전미·콩 등의 6종류이다. 즉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공부는 목면·오승포·저포·미·꿀·촉밀·참기름·들기름·콩 등이다.⁵⁷⁾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전기 공물은 토산공물과 함께 田貢物, 즉 田貢이 존재하고 있었다.⁵⁸⁾ 부산지역의 민들은 전세, 즉 수전에서 米와 한전에서 잡곡을 대신하여 이들 품목을 전공으로 수취당하고 있었다.

전세공물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여 오던 관행이었고, 조선 건국 초기에도 이를 실시하였다. 그것은 태조 원년에 공부를 상정할 때 경상도의 여러 군현은 많이 布貨로 정하여 육로를 통하여 상납시키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⁵⁹⁾ 『경국대전』에는 전세로 내는 포의 종류로 綿紬·면포·저포·정포 등과 2 升數와 尺數가 기록되어 있

來屬시켰다가 태종 9년에 다시 梁州로 붙였고, 세종 10년에 도로 동래현으로 붙였다.

- 56) 조선전기에는 속현이 점차 소멸되어 가는 추세였고, 주현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동평현은 속현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동평현의 기록은 지리지에 수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57)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각 도마다 厥賦항목과 厥貢항목이 있는데, 전자는 전세공물이고, 후자는 토산공물이다.
- 58) 조선전기 전세공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田川孝三, <李朝貢物考> 『李朝貢納制의 研究』, 동양문고, 1966 ; 강제훈, <조선초기의 전세공물> 『역사학보』 158, 1998)
- 59)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4월 을미조.

다.⁶⁰⁾ 그리고 전세공물에 대해서는 태종 1년 貢賦詳定都監에서 공부의 수를 올리어 아뢰기를, 여러 倉庫·宮司의 소속인 收布田 2만 5천 31결은 지금 3분의 1은 正五升布로 거두고, 그 나머지는 쌀로 거두며, 收蜜田 1천 3백 10결·收蠟田 7백 10결·收油田 9백 47결은 供上의 年例와 別例로 쓸 꿀[蜜] 30석, 납(蠟) 1백 20근, 기름[油] 70석으로 計定하여 定屬하고, 그 나머지는 쌀로 거두며, 收綿田 37결은 代田으로 定屬하고, 호조의 소속인 正五升布를 거두는 밭 2만 2천 1백 32결은 代田으로 定屬하고, 그 나머지는 쌀로 거두며, 공조의 소속인 白苧布 1백 60필을 거두는 밭은 쌀로 거두며, 內府 소속인 正五升布를 거두는 밭 7천 3백 72결·收油田 6백 22결·苧布를 거두는 밭 1천 2백 65결은 代田으로 定속하고, 廣興倉의 소속인 收油田 3천 3백 결·정오승포를 거두는 밭 2만 7천 9백 78결은 모두 쌀로 거두고, 上項의 收米田 내의 代田은 布貨·雜物로써 貢賦를 정하고, 전에 포화·잡물을 거두던 밭 내의 實田은 쌀로 거두되, 각각 그 수에 준해서 수납하고, 각도의 멀고 가까움과 수운의 어렵고 쉬운 것으로써 삼사에서 수를 정해서 시행하여 移文하게 하소서 하니 윤택하였다는 중요한 기록이 있다.⁶¹⁾ 조선초기의 포화전은 84,215결, 유밀전이 6,889결로 집계되므로 전세공물로 계정된 전결은 91,104결이다. 포화전은 조선전기 전체결수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²⁾ 다만 포화전⁶³⁾에서 수취된 것은 세종 19년에 이르면 正布 元數가 거의 10만여 필에 달한다고 할만

60) 『경국대전』 권1, 호전 요부조.

61)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5월 신묘조.

62) 조선전기 포화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田川孝三, 〈李朝貢物考〉 『李朝貢納制의 研究』, 동양문고, 1964 : 李載集, 〈朝鮮初期 布貨田에 대한 一考察〉 『韓國史研究』 91, 1995).

63) 포화전에서 수취되는 물품의 용도는 왕실제정을 비롯하여 호조, 재용감, 광흥창의 녹봉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이재룡, 위의 논문).

큼 그 수가 많다.⁶⁴⁾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각 도마다 厥賦항목과 厥貢항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자가 전공을 말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세종실록지리지』의 전공

도 별	종 류
경기도	白苧布, 正五升布
충청도	白苧布, 正五升布, 紬布, 綿布, 綿子
전라도	苧布
경상도	綿紬, 正布, 白苧布, 雪綿子, 綿布, 棉花
강원도	正布

위의 <표 7>에서 처럼 5도에서 수취되는 전공은 백저포, 저포, 정오승포, 정포, 설면자, 주포, 면주, 면포, 면화 등이 있다. 그런데 경상도의 군현에서 수취되는 전공의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편 『경상도지리지』에는 공부와 함께 토산공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속현을 포함한 110개 군현에서 가장 많이 수취되고 있는 전공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경상도 군현의 전공의 순위

종 류	정오승포	면 자	면 주	목 면	저 포
군현 수	105	88	82	81	37

위의 두 <표 7>과 <표 8>을 비교하면 서로 비슷한 양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경상도지리지』에 기록된 전공의 순위와 『세종실록지리지』의 전공의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64)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 2월 기사조

이처럼 포화전은 경상도를 비롯한 각 도에 배정되었는데, 경상도에 가장 많이 배정되었다. 이것은 전세의 수취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경상도 연해지역의 전세는 김해 불암창, 창원 마산창, 사천 통양창을 통해 조운으로 전라도 충청도를 거쳐 경창에 수납되었으나,⁶⁵⁾ 정종 원년에 육지로 운송되는 등의 여러 번 반복되었다.⁶⁶⁾ 하지만 경상도의 전세는 다시 태종 3년부터 육지로 충주 慶興倉(=가흥창)에 운송되어 그곳에서 경창에 운송되었다.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거제와 남해의 전세는 州倉에 수납되고, 그 외의 지역은 육송으로 운송되는데, 예안과 봉화는 죽령을 넘고, 여타지역은 문경의 草岾을 넘어 가흥창을 거쳐 경창에 수납되었다고 한다.⁶⁷⁾ 따라서 경상도의 민들은 전세의 원거리로 운송으로 많은 고통이 전가되었다.

경상도의 민들은 전세인 미곡을 布로 납부하려고 하였다. 다음의 자료는 경상도의 민들이 미를 대신하여 포를 전공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4-다〉

A)왕이 또 묻기를, 지금 백성으로 하여금 布貢을 바치게 하면,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겠는가? 또한 제때에 바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盧開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布貢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큰 가뭄에 비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바치게 하면 백성들이 모두 기뻐서 따를 것입니다.” 하였다

65)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66) 조선전기의 조세운송체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六反田豊, 〈李朝初期의 田稅輸送體系〉 『朝鮮學報』 123, 1987).

67) 밀양, 양산, 창녕, 칠원, 영산, 김해, 창원, 함안, 진해, 의령, 조계, 하동 등의 전세는 선편으로 낙동강을 통해 문경 草岾을 넘어 운송하였고, 여타 지역은 육로로 운송하였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는 낙동강을 거쳐 운송하던 지역이 밀양, 김해, 창원, 함안, 의령으로 줄어들었다.

(『세종실록』 권2, 태종 원년 12월 갑술조)

- B) 호조에서 상언하기를 ---더욱이 경상도에서 납세하는 사람들이 전에 모두 포물을 가지고 충주(忠州)에 가서 쌀을 바꾸어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아울러 모두 금하게 하면 생활이 곤궁해질 것입니다(『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정월 을묘조)
- C)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아뢰기를, --- 각종 科田은 3분의 1을 경기 밖의 外道에 주되, 수로가 가로막히고 거리가 먼 도에서는 모두 布帛으로 거두어 바치게 하되, 혹 과중하게 거두어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호조로 하여금 합당하도록 요량하여 규정을 정하게 하고, 그 규정을 어기고 과중하게 걷는 자는 田客으로 하여금 관가에 고하게 하여, 그 밭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무법하게 거둬 받는 문을 막도록 하소서, --- 임금이 이에 좃아 그 과전의 포백으로 수납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의 시가로 바치게 하되, 여기는 자는 수령으로 하여금 상고(詳考)하여 조사하게 하였다(『세종실록』 권2, 세종 즉위년 10월 기묘조)
- D) 경상도 감사가 민간의 고질적 폐단이 되는 조항을 아뢰기를, 태조 즉위년에 貢賦를 자세히 정할 때에 상도의 여러 고을에는 포화를 많이 바치도록 정하여, 육로로 운반 상납하게 하였으며, 바닷가의 각 고을에는 미곡을 많이 바치도록 정하여 海路로 운송하게 하였더니, 태종 6년에 처음으로 조운을 폐지하고 모두 충주의 金遷江으로 세곡을 수송하게 하면서 상도와 하도의 쌀과 베를 다시 균평하게 고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먼 하도에서 바칠 米穀은 많고 사람과 말은 피로하여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청컨대, 쌀로 바치는 것과 베로 바치는 것을 상도와 하도에 나누어 정하여서 부역을 균평하게 하소서(『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4월 을사조)

위의 자료 A)는 태종 원년에 노한이 경상도의 민들이 布로 전세를

바치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자료 B)는 경상도의 민들이 전세로 포를 충주까지 운송한 이후 다시 미로 교환하고 있고, 자료 C)는 경상도의 과전을 포로 수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자료 D)는 경상도의 상도와 하도의 민들에게 전공인 포를 고르게 수취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 경상도지역의 민들은 전공으로 포를 비롯한 특산물을 수취 당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 공부조에 포를 비롯한 공물이 수취품목으로 기록된 요인이었고, 부산지역의 민들도 포를 비롯한 품목을 전공으로 수취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전기 부산지역민들은 토산으로 생산되는 많은 생산물을 공물로도 수취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자료 <4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전기 부산지역 군현의 공물의 수취 현황이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장현의 토공은 21종, 16종, 20종에 이른다. 반면 동래현의 토공은 34종, 34종, 24종이다. 동평현의 토공은 23종이다. 속현인 동평현이 주현인 기장현보다 토공의 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상도지리지』에서 동평현과 동래현은 밤·표고·미역·김·우뭇가사리의 5종이 중복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단계에서 동래현이 부담하는 공물은 동평현과 중복되었던 5종을 제외하면 18종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동래현은 『경상도지리지』 단계의 34종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그대로 34종이다. 동래현의 공물부담이 다소 경감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에서는 공물의 부담이 더욱 경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기장현과 동래현은 인구와 토지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물의 수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는 조선전기 동래현의 위상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현의 정치적 위

상에 따라 공물의 품목이 조정되고 있었다.⁶⁸⁾

한편 조선전기에는 공물 이외에 각 지역의 토산의 현물을 공납하는 진상이 있었다. 진상은 본래 세로 바치는 의무라기보다는 국왕에 대한 지방장관의 禮獻으로 국왕의 어선을 비롯하여 궁중의 祭享·약재·기타 등에 쓰일 물품을 감사·병사·수사 등이 월 1차 상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상은 거의 민호의 부담으로 징수되었다. 따라서 진상은 공물과 다름없었다.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진상품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전기의 토산 등의 사례를 참고 할 때 땅에서는 인삼과 약재류, 바다에서 생산되는 미역과 광어·전복 등의 해산물이 주요한 품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⁶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산지역의 공물은 전세공물과 토산공물이 함께 수취되었다. 전세공물은 포류를 중심으로 수취되었고, 토산공물은 지역의 특산물이 수취되었다. 토산공물과 함께 진상품으로 수취되었는데, 이는 지역의 특산물인 미역을 비롯한 해산물이 주로 수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지역의 농업생산은 수전과 한전에서 1년 1작을 기본으

68) 이정희,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경제> 『港都釜山』 2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4.

69)李宗峯, <機張의 歷史> 『機張郡誌(상)』, 2001.

로 하고 부분적으로 1년 2작을 실시하였는데, 이 같은 농업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사적소유가 널리 존재하였다. 하지만 2등호인 호 이상도 존재하였지만 5등호인 잔잔호가 대다수였다. 이를 기본으로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농업경영방식은 농장제와 병작경영이 널리 실시되고 있었고, 점차 병작경영이 강화되는 추세였다.

둘째,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전세는 경창으로 수납하는 상납미로 분류되었다가 성종 6년부터 倭料를 충당하기 위한 하납미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전세는 미와 곡물로만 납입한 것은 아니고, 미와 곡물 대신에 전세공물인 布 등을 대신 납입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전세는 국가에서 규정된 양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고 운송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조선전기 부산지역민의 전세 부담액 실제보다 과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공물은 전세공물과 토산공물이 함께 수취되었다. 전세공물은 포류를 중심으로 수취되었고, 토산공물은 지역의 특산물이 수취되었다. 토산공물과 함께 진상물로 수취되었는데, 이는 지역의 특산물인 미역을 비롯한 해산물이 주로 수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